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15호

붙임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를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
4.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 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교육경비보조와”를 “그 밖에 교육 경비 보조사업과”로 한다.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다.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조여부”를 “보조 여부”로, “여수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어서”를 “있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가”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로, “각

호의 1”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의외”를 “교부 목적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3. 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

4. 여수시와 여수시민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설치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

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보조사업별 교부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대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경비보조에”를 “교육경비 보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 ----- ----- <u>교육경비 보조</u> ----- -----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학교 인센티브 지원 3.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초·중·고교 특기적성반, 산학연계반, 자격증 취득반 등 지원 5.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10.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사업 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p>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u>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 <u>사항을 심의·의결하기</u> ----- ----- -----.</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u>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과 교육관계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u>(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④ (생략)</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u>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u> 2.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u> 3. <u>교육장이 추천하는 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간부 2인</u> 4. <u>시장에 추천하는 교육관계전문가 3인</u>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u> ② (생략)</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u>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업무주관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u>이 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 ----- ----- <u>업무주관 과장</u>----- ----- <u>업무담당 팀장</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u>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u></p> <p>가. (생략)</p> <p>나. <u>보조사업의 적정여부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u></p> <p><u><신설></u></p> <p>3. <u>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u>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 기능) ----- 다음 각 호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보조사업의 적정여부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u></p> <p>다. <u>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사항</u></p> <p>3. <u>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u> -----</p>
<p>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u><신설></u></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서 신설></u></p>	<p>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p> <p>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p> <p>③ -----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전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u>학교의 장</u>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 3.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생략) 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2. (생략) 3. 보조사업에 <u>소요되는</u> 경비의 사용방법 4. (생략) 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u>보조여부를</u>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u>여수교육청</u>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u>학교장과 교육장</u>----- ----- ----- -----.</p> <p>1. 2. (현행과 같음) 3. ----- <u>필요한</u> ----- -----</p> <p>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p> <p>② ----- ----- ----- -----.</p> <p>1. 2. (현행과 같음) 3. ----- <u>필요한</u> ----- -----</p> <p>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p> <p>③ ---- <u>제1항에 따른</u> ----- ----- ---- <u>각 호</u>----- - <u>보조 여부</u>----- ----- <u>교육장</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 <u>있어</u> ----- ----- -----.</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p> <p>① <u>학교의 장</u>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u>학교</u>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1. 보조금을 <u>교부목적의외의</u> 용도로 사용한 때</p> <p>2. (생략)</p> <p>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u>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u></p> <p><u><신설></u></p>	<p>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p> <p>① <u>학교장과 교육장</u>-----</p> <p>-----.</p> <p>② ----- <u>학교와 교육지원청이</u> ---- <u>각 호</u>-----</p> <p>-----.</p> <p>1. ----- <u>교부 목적외</u>-----</p> <p>-----</p> <p>2. (현행과 같음)</p> <p>3. <u>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u></p> <p>4. <u>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u></p>
<p>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p> <p>① <u>학교의 장</u>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p> <p>① <u>학교장과 교육장</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1. <u>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u></p> <p>2. <u>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일부 학생을 위한 사업 및 교육청 고유의 사무</u></p> <p>4. <u>시와 시민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설치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u></p>

현행	개정안
<p>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u> 2. <u>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 보고서</u>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p>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u>학교에</u>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u><신설></u></p> <p><u><신설></u></p>	<p>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 ----- <u>학교장과 교육장</u> ----- ----- -----.</p> <p><u><삭제></u></p> <p><u><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그 <u>밖에</u> ----- <p>② ----- ----- ----- <u>학교 및 교육지원청</u> ----- ----- -----.</p> <p>③ <u>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전년도 보조사업별 교부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지연에 따른 대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15조(학교시설의 개방) <u>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 ----- ----- -----.</p>
<p>제15조 (생략)</p>	<p>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 별지 제1호서식</p>	<p>* 별지 제1호서식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경비보조에”를 “교육경비 보조에”로 한다</p>